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771
----------	-----

2024. 12. 11.(수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28일

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최병희)

### 가. 제안사유

-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기구 조정
  - “기획관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행정기구 명칭 변경(안 제5조 등)
  - “농업기술원”에 분원을 두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 신설(안 제24조의2)
- 분장사무 조정

- 문화체육관광국 :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 신설(안 제10조)
- 소방본부 : 사무명칭 변경(119특수구조단 → 119특수대응단)(안 제14조)
- 청남대관리사업소 :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9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기획관리실과 농업기술원의 기구를 조정하고, 문화체육관광국·소방본부·청남대관리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개정을 하려는 것임.
-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존 “기획관리실”의 행정기구 명칭을 “기획조정실”로 변경하려는 것으로,
  - 도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고,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“기획조정실”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견 없음.
- 안 제10조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분장사무에 정원문화 확산, 정원산업 생태계 육성 및 정원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
  - 2015년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국가정원의 개념의 등장을 계기로 수목원·정원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,
  - 특히 우리 도는 “자연정원 충복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바, 이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견 없음.
- 안 제14조는 기존 “특수구조단”의 명칭을 “특수대응단”으로 변

경하려는 것으로,

-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이 2021년 일부개정을 통해 119 특수대응단의 설치·폐지·통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함께, 119특수대응단장 및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, 이를 우리 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.

○ 안 제24조의2는 농업기술원 분원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,

- 2025년 2월 준공 예정인 충북 영동군 소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분원은 충북 남부권 균형발전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었고(2025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참조),
- 스마트기술팀, 전전묘개발팀과 포도연구소, 대추연구소, 와인연구소가 이전하여 설치 목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, 특별한 이견 없음.

○ 안 제49조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에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,

- 나라사랑교육문화원이 2024년 9월 준공됨에 따라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, 특별한 이견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기획관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기획관리실)”을 “(기획조정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에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2.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

11의3. 정원산업 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

11의4. 정원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

제14조제10호 중 “119특수구조단”을 “119특수대응단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분원) ① 기술원에 남부권 균형발전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분원을 둔다.

② 분원은 충청북도 영동군 관내에 둔다.

제4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②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③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④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⑤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⑥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⑦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한다.

⑧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⑨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⑩ 충청북도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⑪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⑫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⑬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⑭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⑮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⑯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⑱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⑰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⑱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㉑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㉒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기획관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 한다.

㉓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㉔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 칭	소 관 부 서	
	주관실국	부 서
일반행정 분 과	기획조정실 (정책기획관)	의회사무처, 대변인, 감사관, 자치경찰위원회, 기획조정실, 행정국, 충북도립대학교, 자치연수원, 서울세종본부, 북부출장소, 남부출장소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5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 ①</b>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기획관리실</u>, 재난안전실, 경제통상국, 과학인재국, 투자유치국, 보건복지국, 바이오식품의약국, 문화체육관광국, 농정국, 환경산림국, 균형건설국 및 행정국을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b>제6조(<u>기획관리실</u>)</b> <u>기획관리실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<b>제10조(문화체육관광국)</b>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2. ~ 14. (생략)</p> <p><b>제14조(소방본부)</b>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	<p><b>제5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 ①</b> - ----- <u>기</u> <u>획조정실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6조(<u>기획조정실</u>)</b> <u>기획조정실장</u> -----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0조(문화체육관광국)</b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의2.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1의3. 정원산업 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1의4. 정원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2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4조(소방본부)</b> ----- -----.</p>

1. ~ 9. (생략)

10. 119특수구조단 운영에 관한 사항

<신설>

제49조(소관사무)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119특수대응단 -----  
--

제24조의2(분원) ① 기술원에 남부권 균형발전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분원을 둔다.

② 분원은 충청북도 영동군 관내에 둔다.

제49조(소관사무) -----  
-----

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